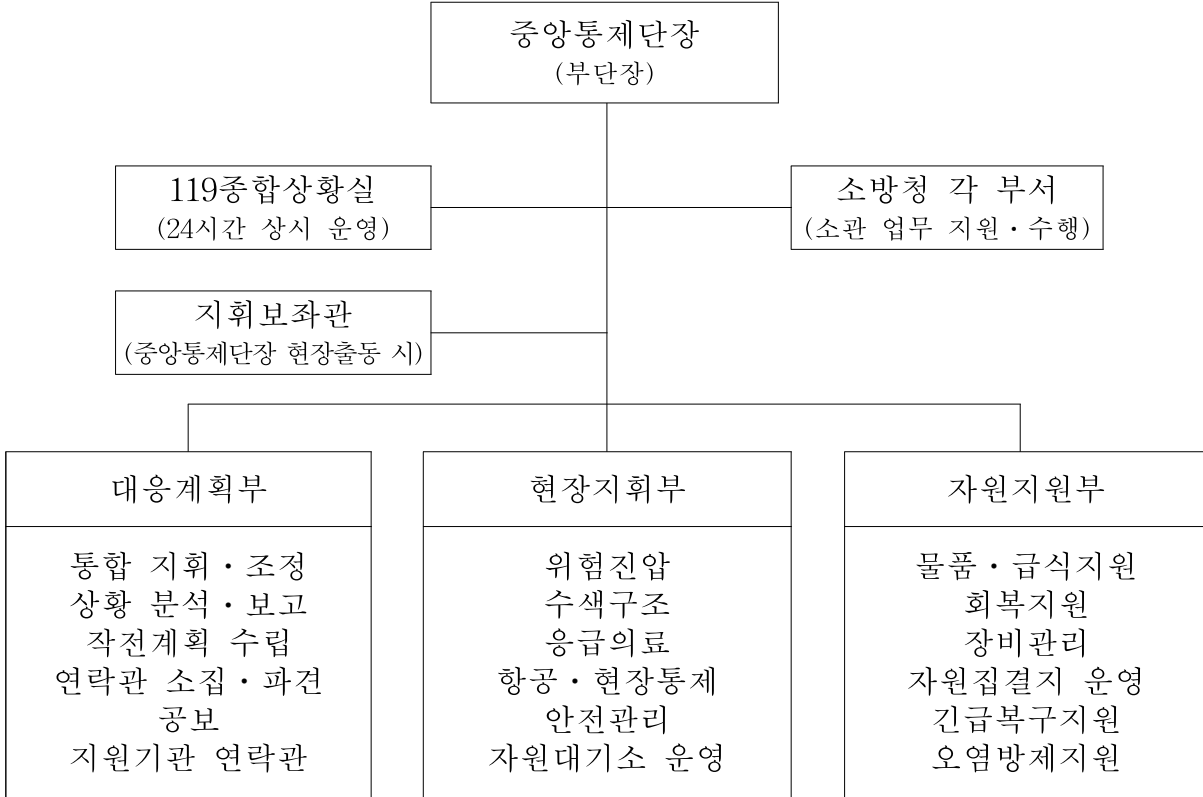


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[별표 3] <개정 2025. 7. 1.>

중앙통제단의 구성(제12조제1항 관련)

1. 중앙통제단 조직도



2. 부서별 임무

부서별	임무	
중앙통제단장	가. 긴급구조활동의 총괄 지휘·조정·통제 나. 정부차원의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가동	
119종합상황실	가. 중앙통제단 지원기능 수행 나. 긴급구조대응계획 중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동지원 다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유관기관 등에 상황 전파 라. 대응계획부(공보)와 공동으로 긴급대피, 상황전파, 비상연락 등 실시	
소방청 각 부서	가. 부서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중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동지원 나. 각 소속 기관·단체에 분담된 임무연락 및 이행완료 여부 보고	
지휘보좌관	가. 중앙통제단장 보좌 나. 그 밖의 중앙통제단장 지원활동	
대응계획부	통합지휘·조정	가. 긴급구조체제 및 중앙통제단 운영체제 가동 나. 시·도 소방본부 및 권역별 긴급구조현장지휘대 자원의 지휘·조정·통제

	상황분석 · 보고	가. 재난상황 정보 종합 분석 · 보고 나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유관기관 등에 상황 보고
	작전계획 수립	시 · 도긴급구조통제단 대응계획부의 작전계획 수립 · 지원
	연락관 소집 · 파견	가. 지원기관 연락관 소집 나.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다. 지원기관 지원 · 협력에 관한 사항
	공보	가. 긴급 공공정보 제공과 재난상황 등에 관한 정보 등 비상방송시스템 가동 나. 대중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 다. 119종합상황실과 공동으로 긴급대피, 상황 전파, 비상연락 등 실시
	지원기관 연락관	가. 중앙통제단과 공동으로 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활동 조정 · 통제 나. 대규모 재난 및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재난 발생 시 탐색구조 활동(국방부), 현장통제(경찰청), 응급의료(보건복지부) 지원 등
현장지휘부	위험진압	정부차원의 화재 등 위험진압 지원
	수색구조	정부차원의 수색 및 인명구조 등 지원
	응급의료	가. 정부차원의 응급의료자원 지원활동 나. 정부차원의 재난의료체계 가동 다. 시 · 도 응급의료 자원의 지휘 · 조정 · 통제
	항공 · 현장통제	가. 헬기 등 현장활동 지휘 · 조정 · 통제 나. 응급환자 원거리 항공이송 지휘 · 조정 · 통제 다. 정부차원의 대규모 대피계획 지원 라. 지방 경찰관서 현장통제자원의 지휘 · 조정 · 통제
	안전관리	시 · 도긴급구조통제단의 안전관리 지원
	자원대기소 운영	시 · 도긴급구조통제단의 자원대기소 운영 지원
자원지원부	물품 · 급식지원	정부차원의 물품 · 급식 지원
	회복지원	정부차원의 긴급 구호 활동 및 회복 지원
	장비관리	가. 정부차원의 장비 · 시설 지원 나. 정부차원의 재난통신지원 활동 다. 시 · 도긴급구조통제단 기술정보 지원
	자원집결지 운영	소방청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시 · 도긴급구조통제단 자원집결지 요구사항 지원
	긴급복구지원	가. 정부차원의 긴급시설복구 지원활동 나. 다른 지역 자원봉사자의 재난현장 집단수송 지원

	오염 · 방제지원	정부차원의 긴급오염·통제·방제 지원활동
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비고

1. 중앙통제단 조직은 재난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.
2. 부서별 임무는 예시로서, 재난상황에 따라 임무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임무를 추가할 수 있다.